서울강서우체국 공고 제 2016-05호

서울강서우체국 주관 상시계약집배원 및 우체국택배원 선발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

2016년도 제1회 서울강서우체국 주관 상시계약집배원 및 우체국택배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채용관련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01월20일

서울강서우체국장

1. 상시계약집배원 최종합격자 명단

응시번호	합격자명
강서상시-03	조**
강서상시-02	주**
강서상시-04	전**
강서상시-05	오**

2. 우체국택배원 최종합격자 명단

응시번호	합격자명
강서택배-05	전**
강서택배-06	문**
강서택배-02	박**
강서택배-01	안**

※합격자에 대한 채용은 성적순으로 진행하며 개별통보.

3. 채용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준비

제출하여야 할 임용관계서류

1. 주민등록초본 1통
   기본증명서1통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주민등록등본1통
2. 운전면허증 사본 1통
3. 정보화관련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4.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5. 취업지원대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해당자한함)
6. 채용신체검사서 1통(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서식3)
7. 신원진술서 2통 (동일한 사진(3㎝ × 4㎝) 2매 부착, 서식1)
8. 신원보증보험증권 1통(가입보험금 2,000만원)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2)

※ 임용관계서류는 원서접수 당시 제출한 서류는 제외하고 미제출 해당서류만 제출

서식1

신 원 진 술 서(약식)

<table>
<tr><td>성 명</td><td colspan="2"></td><td>한 자</td><td colspan="2"></td><td rowspan="4">사 진
(3cm×4cm)</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d>혈액형</td><td></td></tr>
<tr><td>등록기준지</td><td colspan="5"></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실거주지</td><td colspan="3"></td><td rowspan="2">연
락
처</td><td colspan="2">자택전화 :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td></tr>
<tr><td>직 장</td><td colspan="3">직장명 :
소재지 :</td><td colspan="2"></td></tr>
</table>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학 력		. . ~ . .			
		. . ~ . .			
		. . ~ . .			

	기관, 업체 및 정당, 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경 력		. . ~ . .		
		. . ~ . .		
		. . ~ . .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해외 거주 사실		. . ~ . .		
		. . ~ . .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계급	군 번	미 필 사 유
병 역		. . ~ . .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			子		
	父			子		
	母			子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서식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업무수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범죄경력·수사·수배 조회자료(경찰청)

서울강서우체국장 귀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서식3]

(앞쪽)

채용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구 분	②시험실기기관	③응 시 직	④응시번호	⑤ 성 명 (한 자)	( )	사 진 (3㎝×4㎝) ※ 압인 또는 계인
⑥검 사 시						
⑦재 사 용				⑧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신 장	cm	체 중	kg
흉 위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
	우 : ( )				우 : ( )

안 질 환		이비인후질환	
치 아		호흡기질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화기질환		피 부 질 환	
순환기질환		정 신 질 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

검 사 결 과 합 격 여 부	□ 합 격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판정보류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1년

210㎜×297㎜(보존용지 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②란에는 시험실시기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서울지방우정청)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기능9급공무원)
   다. ⑦란에는 신체검사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으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응시자는 채용신체검사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 또는 계인(契印)을 하여야 합니다.
2.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입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없음 등
3.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안에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4.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 검사가능한 의료기관 】

○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지정병원**은 어느 곳이든 가능합니다.
* 예) ○○대학병원, ○○종합병원, ○○의원, 보건소 등
*** 단, "○○○○협회" 등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시에는 의료법상 병원·의원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